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상훈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820
----------	-------

발의연월일 : 2026. 2. 12.

발 의 자 : 안상훈 · 김성원 · 조정훈
김용태 · 김재섭 · 우재준
백종현 · 고동진 · 박성훈
김 건 · 김은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기금이 정치적 영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본래의 목적과 달리 운용되거나 수익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다는 사회적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의 목적을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수익의 극대화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 운용지침」에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다른 목적을 위해 운용되지 않도록 운용의 독립성 원칙을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원칙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도적 구속력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국가가 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에 있어 독립성을 보장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운용 과정에서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에 입각하여 안정적

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및 제102조제2항).

법률 제 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지급을”을 “지급과, 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로 한다.

제10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리·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u>지급</u> 을 보장하 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의2(국가의 책무) ----- ----- ----- <u>지급과,</u> <u>기금 관리 · 운용의 독립성을</u> --- ----- ----- -----.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생 략)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u>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 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에서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 운용하 되,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을 해치지 아니하 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 만, 제2호의 경우에는 재정경제 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 관</u> <u>리 ·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고</u> ----- ----- ----- ----- ----- ----- ----- ----- ----- ----- -----.

협 의하여 국채를 매입한다. 1. ~ 7. (생략) ③ ~ ⑥ (생략)	----- ----- -----. 1. ~ 7.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	---